

【 4 】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발의년월일 : 1997. 4. 1.

발 의 자 : 이상원의원의외 2인

□ 제안이유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인 준농림지역내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개발의 사전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행위제한대상은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안 제3조)
- 나. 구체적인 제한지역 결정(안 제4조)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제한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이하"숙박업" 이라한다)으로 한다.

(단, 복합건물내 식품접객업은 제외한다.)

제4조(제한지역결정) ① 숙박업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원 보호구역내

2.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변으로부터 50미터 이내지역

(단, 음식점 제외)

3.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중 전 전용지와 답 전용지내 우량농지.

4.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지역

5. 하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준용하천으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천수질 보존이 필요한 지역

(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 인입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6. 20호이상 집단거주 부락내 지역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